

2005. 7. 29.(금)

제11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7. 19.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5. 7. 21.

다. 상 정 일 자 : 2005. 7. 25.(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가. 제안사유

-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 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전문인력이 확보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토록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청소년기본법 제18조는(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운영위탁)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 명서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서부동 353번지에 부지556㎡, 건축면적 118평을 사업비 40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면 수리하여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는 3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청소년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시설의 운영)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겠으며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영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장점도 많다고 하겠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충족한 자에게 위탁해야 할 것이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지금 위탁경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들이 있나요?
(김진학 위원)
-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김진학 위원)
- 수익재원은 뭡니까?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받습니까?
(김진학 위원)

- 인건비는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죠?
(민경완 위원)
- 이용자들은 여기 정보검색실, 동아리방, 기타 영상실 이용이 전부 무료입니까? (민경완 위원)
- 지금 수탁받을 청소년단체는 우리 제천시에 몇개 단체가 있어요?
(민경완 위원)
- 구 명서동 동사무소 3층은 더 증축을 한겁니까? (윤성열 위원)

나. 답변요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 네, 있습니다.
-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고 봉사정신이 플러스 되어야만 할 수가 있지 영업적으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 문체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 네, 우리 시민회관에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큰거죠.
- 제천시에는 3, 4개 단체가 있습니다.
- 네, 증축한 겁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부. 끝.